# 서울특별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시설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250호
나. 발 의 자 : 박기열 의원외 4명
다. 발의일자 : 2014년 12월 4일
라. 회부일자 : 2014년 12월 8일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서울시는 장애인의 업무보조를 위해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동시에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

하지만 관련 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 요금을 포함한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는 서울시 방침에 의해 운영됨으로써 양 수단의 이용요금 격차 심화 및 지원규모에도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관련 장애인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요금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조례로 명문화함으로써 관련 시설의 발전과 요금인하를 유도하고, 장애인들의 교통복지 증진과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 골자

1)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2조)
2) 장애인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3) 동 조례의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4) 보조금 지급 범위 및 센터 차량의 이용요금 기준을 정함(안 제5조)
5) 보조금 지원 및 생활·이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6)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효율적인 사용·관리를 위하여 지도·감독 내용을 규정함(안 제7조)

다. 참고 사항

1) 관련 법령 : 해당사항 없음

2)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3) 기　　타 : 신구조문대조표 별첨

# 3. 검토의견

## 가. 제안 배경 및 개요

○ 지체·뇌병변 장애인과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이 이동 수단으로 이용하는 “장애인 콜택시”와 시각장애와 신장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간(2015.8.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전까지 “장애인심부름센터”임) 이용요금 차이에 따라 많은 민원이 발생됨.

〈이용요금 체계 비교〉

| 구 분 | 기본요금 (5km까지) | 5~10km 1km당 | 10km초과 1km당 | 시간거리병산요금 |
|---|---|---|---|---|
| 생활·이동지원센터 | 2,000원 | 200원 | 200원 | 5km초과시 100초당100원 |
| 장애인콜택시 | 1,500원 | 300원 | 35원 | 없 음 |

○ “장애인콜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1] 및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조례」에 따라 운영 및 요금[2]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3]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별도의 조례가 없어, 운영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2)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조례 제16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및 대수)**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요금(거리비례제)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및 요금 관련 사항에 대해 서울시 조례로 명문화함으로써 관련 시설의 발전과 요금인하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임.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와 장애인콜택시 비교〉

| 구 분 |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 장애인콜택시 |
|---|---|---|
|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br>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 운영주체 |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시지부 | 市, 시설관리공단 |
| 관리부서 |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 운영대수 | 158대 | 424대+개인택시 50대 |
| 탑승률 | 콜처리율 49% | 88% |
| 이용요금 | 일반택시의 35%(실비징수) |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에 의거 도시철도요금의 3배이내(법정기준) |
| | 5㎞ 2000원, 5㎞이상 km당200원<br>5㎞초과 100초당 100원 병산 | 5㎞ 1500원, 5~10㎞ km당300원,<br>10㎞초과 km당35원 |
| | 이용료 운전원 인건비로 지급 | 이용료 세입조치 |

## 나. 조례 제정의 타당성 검토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장애인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사업 및 운영계획, 이용요금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는 관련법에 따라 서울시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는 별도의 조례 없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콜택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이용요금이 높아, 장애인전용차량인 양 수단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 많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됨.

※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 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 보조나 그 밖의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시행규칙,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종류)

〈이동 수단별 이용요금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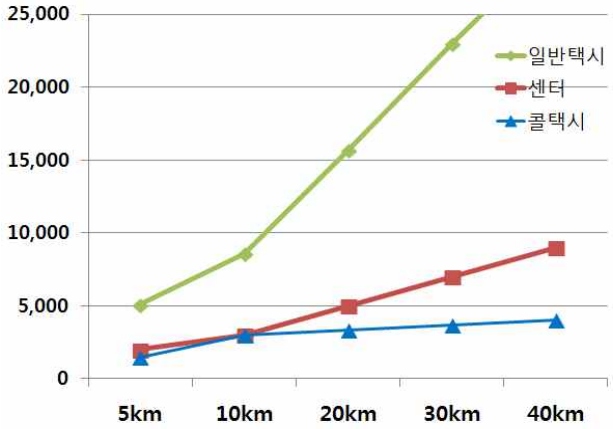


(단위:원)

| 거 리 | 콜택시 | 센터 | 센터대비 콜택시요금 | 일반택시 |
|---|---|---|---|---|
| 5km | 1,500 | 2,000 | 75% | 5,100 |
| 10km | 3,000 | 3,000 | 100% | 8,600 |
| 20km | 3,350 | 5,000 | 67% | 15,700 |
| 30km | 3,700 | 7,000 | 53% | 23,000 |
| 40km | 4,050 | 9,000 | 45% | 30,000 |

○ 또한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이용을 희망하는 복지서비스에서 장애인 특별운송 사업이 1순위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전의 조사 결과와 비교해 장애인의 이동권 욕구가 더욱 높아진 것임을 알 수 있음.

〈보건복지부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

향후 이용을 희망하는 복지서비스

| | '05년 | '08년 | '11년 | '14년 |
|---|---|---|---|---|
| 1순위 | 장애인 재활 병의원 | 장애인 복지관 | 장애인 복지관 | 특별운송사업 (이동지원센터) |
| 2순위 | 장애인 복지관 | 장애인 재활 병의원 | 특별운송사업 (이동지원센터) | 장애인 재활 병의원 |
| 3순위 | 특별운송사업 (이동지원센터) | 특별운송사업 (이동지원센터) | 장애인 재활 병의원 | 장애인 재활 치료시설 |
| 4순위 | - | - | - | 장애인 복지관 |

○ 따라서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할 때,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및 요금을 조례로 명문화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조례 제정에 따른 긍정적 측면이 큰 것으로 판단됨.

## 다. 조항별 주요 검토 의견

### 1) 조례 제명 수정 필요

○ 조례 제명이 “서울특별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시설 지원 조례안”이나, 2015.8.3.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서울특별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시설 지원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함.

### 2) 상위법 조항 인용 부적절(안 제3조 관련)

○ 본 조례안 제3조제2항에서는 지원계획 수립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6항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 근거 조항 인용이 올바르지 않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6항제1호 및 제2호”는 동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4)]”로 수정하여야 함.

### 3)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로 명칭 변경(안 제4조 관련)

○ 안 제4조(지원대상) 중 “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의 〔별표 4〕에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로 개정(2015.8.3.)됨에 따라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함.

---

4) **제6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4)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이용요금 관련(안 제5조 관련)

○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이용요금이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음.

○ 그러나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는 상기 조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와는 달리 ‘이동지원서비스’ 외에도 ‘생활보조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어 동일 요금체계를 적용토록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이동서비스에 대한 요금 체계는 통일하되, 생활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은 별도 부과하는 방식으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이용요금을 “이동서비스”와 “생활지원서비스”로 이원화할 필요성이 있음.

- 즉, “이동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며, “생활지원서비스를 추가하여 이용할 경우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규칙」에 의한 이용요금을 추가”하도록 본 조례안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